

[카드뉴스] 자동차 관련 제도 올해는 무엇이 달라질까?

»» FUN&뻘

뻘하지만 알아두면 FUN한 다양한 정보&팁을 소개해 드립니다.

>koscom newsroom

# 자동차관련 제도

## 올해는 무엇이 달라질까?

참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 자동차 관련 제도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변경된 부분, 앞으로 달라질 부분까지 세제, 환경, 안전 등 각 분야별로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 자동차



전기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한도	100만원	300만원

자동차 및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표와 같이 연장되며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전기·수소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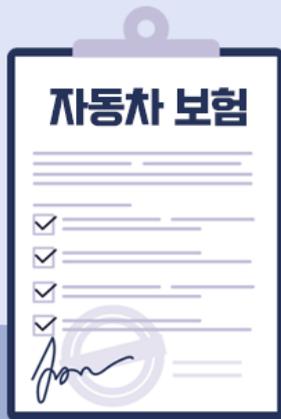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 500만원은 폐지됩니다.  
또한,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되는 초급속 충전기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될 예정입니다.

#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4월 17일부터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관리됩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면 형사처벌됩니다.

#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전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 도로 과태료와 범칙금은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이었지만 개정 후 12만원이 됩니다.

#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1년 이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이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됩니다.

-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